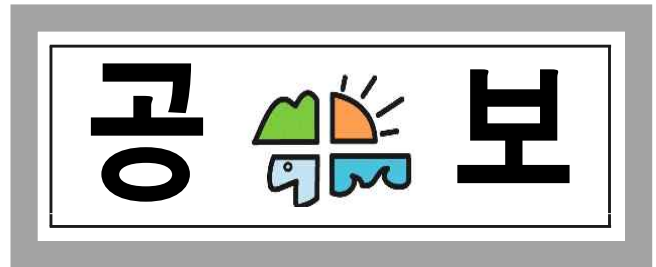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66호 2014년 6월 13일(금)

공 고

-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7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장애인단체 국민대통합위원회 건의안에 따른 차별적인 법규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공공시설 이용시 각종차별과 이용제한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수탁자 선정의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른 규정을 마련

3. 주요내용

- 시설의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구 삭제(제8조1항)
- 체육시설 관리 위탁에 대한 공개모집 방식 명시(제19조1항)
- 조례의 이전 개정(2014. 1. 10. 공포) 당시 누락된 [별표]의 2 ~ 4를 추가
- 개정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전화: 033-639-2146, FAX: 033-639-234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033-639-214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한”을 “따라”로, “기타행위”를 “그 밖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에 그 밖의 행사 등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조 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 중 “문란케하는 자”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취된 자”를 “만취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시설”을 “해당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을 “철거한 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일부를 체육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7조제4호와 제13조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부대)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 2009.5.7, 2009.7.23, 2014.1.10>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목 적)		구 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종합경기장	육상 경기장	육상경기	어린이	15,000	22,500	
			청소년	30,000	45,000	
			어 른	50,000	75,000	
	축구 경기장 (천연잔디)	축구경기	어린이	80,000	100,000	
			청소년	120,000	150,000	
			어 른	150,000	200,000	
		기타행사		200,000	250,000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경 기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30,000	50,000	
인조잔디 야 구 장	체 육 행 사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30,000	50,000	
	체 육 외 행 사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200,000	300,000	
생활체육관	체 육 행 사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30,000	50,000	
	체 육 외 행 사		어린이	62,500	75,000	
			청소년	87,500	105,000	
			어 른	125,000	150,000	
궁 도 장	궁 도 경 기		—	20,000	30,000	
테 니 스장	테 니 스 경 기		—	15,000	22,500	
카누경기장	카 누 경 기		—	사용불가	사용불가	선수전용
풋살경기장	풋 살 경 기		어린이	5,000	무 료	
			청소년	7,000	무 료	
			어 른	10,000	20,000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경 기		—	무 료	무 료	
반코트 농구장	반 코 트 농 구		—	무 료	무 료	

비 고	① 조기는 주간으로 본다. ② 육상, 궁도경기는 1일 기준 (4시간 이하시 50%적용) ③ 축구경기 및 기타행사는 2시간을 기준 (초과 1시간당 50%를 가산) ※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④ 테니스코트는 1면당 1일 기준 (4시간 이하시 50%적용) ⑤ 풋살경기는 1시간을 기준으로 1일 1회로 제한하나, 종료 이후 시간에 사용신청자가 없을시 사용료 지불 후 추가 사용 할 수 있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⑥ 풋살경기 기준인원은 10명으로 하고, 1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유료사용시 초과인원은 1인당 10%를 가산함) ⑦ 야간사용료는 평일 및 휴일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함 ⑧ 야구경기는 1일회 3시간을 기준(초과 1시간당 50%를 가산)<개정 2009.07.23> ⑨ 체육행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산하 단체,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및 경기
-----	---

2. 중계방송료

(단위:원)

종 별	구 분	단 위	중계방송료		비 고
			TV	라디오	
체육행사·경기	국제경기	1 회	50,000	25,000	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국내경기	1 회	20,000	10,000	
공연 등 행사	국 외	1 회	50,000	25,000	
	국 내	1 회	20,000	10,000	
영 화 촬 영		1 회	30,000		
경 기 촬 영		1 회	20,000		
녹 화 라디오녹음			TV 및 라디오 : 중계방송의 반액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별	구 분	단위수량	사용료액	비 고
샤 위	1회	1명	500 <개정 2009.07.23>	(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마 이 크	1일		—	
음 향 시 설	1일		—	
트 레 이 닝 장	1인1회	일반	500	
		학생	300	
전광판,스코어판	1인1회		20,000 <개정 2009.07.23>	
접의자 대여	1회	개당	100	
책 상	1회	개당	300	
T 탁 자	1회	개당	1,000	

4. 상행위 등 사용료

(단위:원)

종 별	사 용 료 액	비 고
프로그램 판매행위	장내 반입 부수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장당가격 × 부수
광고문 게시 (10m×1m 이내)	· 1년 : 500,000원	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 (1개당)
	· 5일 이내 : 50,000원 · 1일 초과 : 10,000원	
기타 선전광고 행위	· 소형(3.5㎡이하) : 30,000원 · 중형(3.5㎡초과~5㎡이하): 50,000원 · 대형(5㎡초과~12㎡이하): 150,000원 · 초대형(12㎡ 초과) : 200,000원	
애드벌룬 및 유사물 에 의한 광고행위	5,000원	1일(개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u>의한</u>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u>기타행위</u> 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생략)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u>자</u> 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u>자와</u>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u>자</u> 를 말하며 65세이상의 <u>자</u> 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8. (생략) 9.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u>따라</u>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u>그 밖의 행위</u> 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u>따라</u>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u>사람</u> 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u>사람과</u>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u>사람</u> 을 말하며 65세이상의 <u>사람</u> 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8. (현행과 같음) 9.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

하여 30인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시장이 결정한다.

1. ~ 6. (생 략)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하여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시장이 결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에 그 밖의 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2. ~ 4. (생 략)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

불가할 때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는 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또는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행위 등 사용료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초과

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행위 등 사용료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생략)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기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설비) ① (생략)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를 체육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발 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교동 795-20번지
3. 공고기간 : 2014. 6. 13. 22.~ 2014. 6. 27.(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허가(신고)번호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교동	795-20번지	임	295	295	영동산업(주)	2013-신축허가-7호 (2013. 3. 28.) 건축주 : 영동산업(주)	기 도로지정 하였으나, 등록전환으로 지번 및 면적변경에 따라 재지정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